

공정거래 자율실천 선언문

다이소아성산업 임직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다이소아성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질서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객에게는 정직한 자세로, 협력회사에는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윤리경영의 실천의지를 2014년 6월에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지향해 온 윤리경영이란 단순히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회사의 핵심목적과 핵심가치, 회사 규정과 사회법규를 준수하면서 고객만족을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실을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경영 방식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한 공정거래법은 그 내용은 물론이고, 이를 적용하는 것 또한 상당히 복잡하여,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남양유업 사태의 예와 같이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들은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고, 회사는 임직원들의 위반 행위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과징금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당국의 조사로 인한 업무지연과 시간 손실은 물론, 시장에서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업무에 적용할 때,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사내 법무팀 또는 동반성장팀과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관습적으로 해오던 업무 관행들도 혹시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그로 인한 법적인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법 위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10대 강령을 제정, 선포하고자 합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으로서의 매장지킴이 10계명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위한 기본으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10대 강령을 바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필히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윤리강령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회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통하여 회사 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불만사항이나 내부고발자 제도 등을 통해 경쟁법규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아성산업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상기 내용들을 충실하게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이소아성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대표이사 회장 박정부